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개 황	1
II.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1. 일반회계	1
가. 세 입	1
나. 세 출	1
(1) 총 괄	1
(2) 전 용	2
(3) 이 월	3
(4) 불 용	3
2. 예비비 지출	4
3. 재무결산	5
가. 재정상태 분석	5
나. 재정운영 분석	7
다. 순자산변동 분석	9
III. 검토의견	11
1.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1131-100)	11
가. 개요	11
나. 예비비 관련 절차 준수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2
다. 예산집행 관련 법령의 준수 필요	16

I. 개 황

2024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회계는 1개의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II.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2024회계연도 특별조사위원회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내역은 없음.

나. 세 출

(1) 총 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 9,000만원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 5월 2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13일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액이 전액 예비비로 배정(2024.10. 2.)되었음.

이 가운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8.2%인 7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C)	집행률 B/A (%)	불용률 C/A (%)
본예산	추경									
-	-	-	890	± 56	890	785	-	105	88.2	11.8

* 이용, 전용, 이체, 조정 등

※ 수치는 단수조정에 따라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 전 용

「국가재정법」 제46조에 의한 전용액은 5,600만원으로 예비비 편성 당시(2024. 8.) 3개월(2024. 9.~11.)로 예상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운영 기간이 시행령 제정 지연으로 연장됨에 따라 12월 분 임차료(210-07) 및 직책수행경비(250-02) 부족분을 각각 자산취득비(430-01) 및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서 충당한 것임.

[2024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12.13)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100)	자산취득비 (430-01)	55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100)	임차료 (210-07)
전용 (2024.12.23)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1		직책수행 경비 (250-02)

(3) 이 월

다음연도 이월액은 원인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았음.

(4) 불 용

불용액은 예산현액 8억 9,000만원의 11.8%인 1억 500만원으로, 구체적인 불용 사유는 민간직원 채용계획변경, 진상규명조사 개시 지연으로 여비 집행률 저조, 위원회 운영 일정 지연에 따른 건설비 미집행 등임.

[2024년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비 목	내 역	금 액
불용 내역	일용임금(110-04)	• 민간직원 채용계획 변경(14명→4명)에 따른 집행률 저조	30
	고용부담금(320-09)		5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집행잔액	5
	특근매식비(210-05)		3
	임차료(210-07)		6
	국내여비(220-01)	• 시행령 제정 지연으로 진상규명조사 개시가 지연되어 여비 집행률 저조	22
	공사비(420-03)	• 위원회 운영 일정 지연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 일정 변경으로 건설비 미집행	34
합 계			105

2. 예비비 지출

2024년도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예비비 사용 내역은 세출예산 사용 내역과 동일함.

[2024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용승인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890	785	-	105
합 계	890	785	-	105

3. 재무결산

특별조사위원회 재무결산은 일반회계 1개로 편성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 분석

2024년말 기준 특별조사위원회 자산총액은 2억 1,9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1억 300만원으로, 순자산 총액은 1억 1,600만원임.

[2024년 특별조사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조직개편일 (B)	증 감	
			금액 (A-B)	비율 (A-B)/B
I. 자산(a)	219	-	219	100
· 유동자산	4	-	-	-
· 투자자산	-	-	-	-
· 일반유형자산	156	-	156	100
· 무형자산	59	-	59	100
· 기타비유동자산	-	-	-	--
II. 부채(b)	103	-	103	100
· 유동부채	3	-	3	100
· 장기차입부채	-	-	-	-
· 장기충당부채	100	-	100	100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b)	116	-	116	100

※ 2024(A) : 2024년 12월 31일자 잔액, 조직개편일(B) : 2024년 5월 21일자 잔액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재정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

2024년도 특별조사위원회 재정운영순원가는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 순원가 6억 8,700만원과 동일함.

[2024년 특별조사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I. 프로그램순원가	687
가. 프로그램 총원가	687
나. 프로그램 수익	-
II. 관리운영비	-
III. 비배분비용	-
IV. 비배분수익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687
VI. 비교환수익 등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87

※ 2024년 : 2024. 5.21.(조직개편일)부터 2024.12.31.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기초순자산	전기 既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오류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
-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 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 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u>기말순자산</u>	

특별조사위원회 순자산은 2024년 말 기준 1억 1,6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6억 8,700만원, 재원의 조달 8억 300만원을 반영한 것임.

구체적으로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액 7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무상이전수입 1,400만원, 기타재원조달 400만원으로 구성됨.

[2024년도 특별조사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I. 기초순자산	-
II. 재정운영결과	687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803
IV. 조정항목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16

※ 2024년 : 2024. 5.21.(조직개편일)부터 2024.12.31.까지

Ⅲ. 검토의견

1.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1131-100)

가. 개요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사업은 10·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8억 9,000만원 중 7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	-	-	890	±56	890	785	-	105	12,400

나. 예비비 관련 절차 준수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2024년 5월 21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회계연도 중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활용했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
- 2024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집행한 예비비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설립 이전에 사무처의 구성 등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설립준비단’의 운영을 위해 활용되었는데, 2024년 8월 예비비 편성 당시 설립준비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고, 예산 관련 업무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도 선출되어 있지 않아¹⁾ 행정안전부에서 예비비를 신청함.

[2024년 예비비 신청 및 배정 관련 일정]

일 시	행정안전부	특별조사위원회
2024. 8.27.	예비비 신청	-
2024. 9. 3.	-	예비비 배정
2024. 9.23.	-	위원장(중앙관서의 장) 선출 사무처 설립준비단 구성
2024.10. 2.	-	특별조사위원회 회계 계정 신설 및 자금 수령

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2024년 8월 27일 예비비를 신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 승인 되었는데, 심사를 거쳐 해당 예산이 9월 3일 특별조사위원회 소관으로 배정되었는데,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공석으로 「국가재정법」 상 중앙관서의 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해당 관서가 아닌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를 신청하고 해당 관서로 예비비지출 승인을 한 것은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임.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별도 독립기구인 점을 고려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경비의 시의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 소관으로 예비비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예비비의 신청은 그 사용이 필요한 때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²⁾, 사무처 설립준비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비비를 신청한 행정안전부에서 사무처 설립준비단을 운영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조직 구성 후 신설된 특별조사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관련 법률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집행 방안이었다고 보임.

2)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향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심의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국가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비비를 신청할 당시 사무처 설립준비단의 활동 기간을 3개월(2024년 9~11월)로 예상하고, 해당 기간에 대응하는 임차료 및 보수 등을 배정받았는데, 시행령 제정 및 공포·시행을 통한 사무처 설립이 예상한 시점보다 지연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의 활동 기간도 시행령 제정 시점까지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설립준비단 사무실 임차료 및 직원 보수 등의 부족분(12월 분)이 발생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2024년 전용 및 세목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사 유
전용 (2024.12.13)	자산취득비 (430-01)	55	임차료 (210-07)	예비비 편성 시('24.8월) 설립준비단 운영기간을 3개월('24.9-11월)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어 '24.12월분 임차료 및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
전용 (2024.12.23)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	직책수행경비 (250-02)	
세목조정 (24.12.20./23.)	일용임금 (110-04)	23	보수 (110-01)	예비비 편성 시('24.8월) 설립준비단 운영기간을 3개월('24.9-11월)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어 '24.12월분 임차료 및 보수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4.11.21/12.23)	일반수용비 (210-01)	6	임차료 (210-07)	
세목조정 (2024.12.23.)	특근매식비 (210-05)	1		
세목조정 (2024.12.23)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4		
세목조정 (2024.12.23)	관리용역비 (210-15)	3		
세목조정 (2024.12.23.)	기타운영비 (210-16)	3		

- 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처 설립 준비 단계에서 시행령 제정을 통해 사무처 조직 구성 등이 연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후 사무처 조직을 기준으로 재차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 제정의 지연으로 연내에 사무처 설립이 어려워져 설립준비단의 계속적 운영을 위해 비목 간 전용 및 세목 조정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함.
- 참고로,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예산의 경우에도 124억원 전액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미 동 위원회가 출범한 2024년 9월 당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이 2025년 1월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2025년 1월 15일에 예비비를 배정받은 것임.
-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의 잔여기간 예산 집행 시 예산의 전용 등 예산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예비비 집행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2026년에는 사업별·비목별로 합리적인 본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예산집행 관련 법령의 준수 필요

- 2024년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처 설립준비단의 사무실 임차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하는 나라키움 저동빌딩을 임대차 목적물로 하여 9월 26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2024년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임대차 계약 개요]

구 분	내 용
임대인 / 임차인	한국자산관리공사 / 특별조사위원회
임대차 목적물 / 임대 면적	나라키움 저동빌딩 지상 7층 / 1,876.97m ²
임대차보증금	513,582,000원
월임대료	51,357,000원
계약기간	2024. 9.27 ~ 2025. 9.26. (1년)

자료 : 특별조사위원회

-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을 다음연도인 2025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 승인시 즉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³⁾.

3) 나라키움 저동빌딩 임대차계약서 제2조(임대차보증금) ① 임대차보증금은 금오억일천삼백오십팔만이천원정 (513,582,000-)으로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차년도(2025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 승인시 즉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025년 예산에 계상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집행하는 내용의 계약은 2025년 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는 2024년에 2025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임차계약에 대해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⁵⁾, 이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의 개시 이후에 발생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함⁶⁾.

□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2024년 9월 26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9월 26일까지로 정하여 계약의 효력이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바로 발생하고 있어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4)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는 향후 추가적인 임대차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